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검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 회항 지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항 지시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상향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8604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검역소장에 위임(안 제7조)”

- 1) 법 제15조제4항의 운송수단 회항 등 이동조치
- 2) 법 제29조제2항의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사항에 관한 협조요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예방접종”을 “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예방접종”을 “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7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 음)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 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검 역조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진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u>예방접종</u>	2. ----- ----- ----- ----- <u>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9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보 건위생관리 조치, 같은 항 제3 호에 따른 <u>예방접종</u>	7. ----- ----- ----- ----- <u>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u>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9204